



보도자료

▶ 안전보건정책팀 팀장 문기섭
서기관 김충모

TEL : 6922-0916
E-MAIL : kimcmo@molab.go.kr
FAX : 503-4490

▶ 2009. 1. 29 배포
▶ 총 2 쪽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알림마당 → 노동부뉴스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노동부, 건축물 철거현장 석면노출 예방대책 입법화

-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통과 -

- 석면함유 건축물 등 철거·해체작업장에서 근로자의 석면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.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.
- 석면은 단열성, 내구성 등이 뛰어나 건축재 등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
 - 근로자가 석면분진을 흡입하는 경우 10~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, 악성중피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1급 발암물질이다.
- 우리나라에서는 70~80년대에 집중 사용되어 80% 이상이 건축재로 사용되었고, 당시 건축된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철거되는 건축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
 - 건축물 철거작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석면관리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.

- 금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·해체하는 경우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, 함유량 등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하고
 - 그 결과 일정량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제거한 후 나머지 철거·해체작업을 진행토록 하였으며
 - 석면을 해체·제거작업은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령에 정한 작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.
- 그 밖에,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·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으며
 -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은 모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고
 -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검진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수건강진단의 직업병 조기진단 기능을 제고하도록 하였다.
- 정현욱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“금번 개정을 통해 석면노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철거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- 개정안은 2월 초에 공포되어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, 향후 노동부는 석면 해체·제거업자의 등록요건 및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·시행규칙에 마련할 계획이다.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내용

Ⅰ 석면함유 건축물 등 해체·제거시 안전보건조치

가. 석면조사제도 도입(안 제38조의2)
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·해체하고자 하는 자는
 - 작업전에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, 함유량 등을 조사토록 하고,
 -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,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음

나. 석면해체·제거 기준 준수(안 제38조의3)

-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을 해체·제거하는 때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노동부령에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도록 함

다. 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·제거(안 제38조의4)

- 건축물 등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* 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**한 전문 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하여 석면을 해체·제거토록 하고
 - (예) 분석결과 함유비율 1% 초과하는 석면이 ① 단일넓이 50㎡ 이상 또는 단일건축물내 분산된 석면의 합이 총 200㎡ 이상인 경우 ② 파이프형인 경우 길이 5m 이상 또는 단일 건축물 또는 설비 내 길이의 합이 20m 이상인 경우
 - ▲ 인력기준 :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작업관리자 ▲ 시설·장비기준 : 음압기, 방진마스크,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등

-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작업 전에 이를 신고하고, 작업관련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관하도록 함

라. 작업후 공기중 석면농도 기준 준수(안 제38조의5)

- 석면해체·제거업자는 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(석면농도기준)*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,
 - * (예) 석면해체·제거 후에는 방진마스크 착용 없이 작업을 하므로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에 준하여 0.01개/cc로 설정
- 발주자들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·철거해서는 안됨

Ⅱ 사업주의 유해·위험요인 파악·관리 및 개선의무 부여(안 제5조)

-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 실태를 파악하여 관리·개선하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, 노동부장관은 기술상의 지침 등을 정하여 지도·권고하도록 함

Ⅲ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의 법적근거 명확화(안 제10조)

- 현행 제10조(보고의 의무)기 시행규칙 제4조의 산업재해발생의 기록 및 보고의무의 근거규정이 되도록 명확히 함
 - ※ 법 제10조(보고의 의무)가 시행규칙 제4조(산업재해발생보고)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위헌논란

Ⅳ 안전·보건교육기관 지정제 폐지(안 제31조)

-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지정제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은 모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

* 산업재해예방기관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대학 등

5]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및 공표(안 제43조)

- 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·장비보유현황, 검진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

6]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요청 근거 마련(안 제43조의2)

- 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 정보, 암질병정보 등 보유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, 관련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